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3호

어촌 정주어항 지정 고시

어촌어항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어촌정주어항으로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어촌정주어항 지정 고시 내역**

어항명	어선 세력	지정대상 어항구역 및 면적		
		면적(㎡)	구 역	어항육지부
세어도항	12척	74,000㎡	선착장기부에서 200m를 반경으로 그은 선내수역	계 : 2,449㎡ 선착장 (1,040㎡) 물량장 (1,409㎡)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32호

**인천광역시서구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분류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조례로 처리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보관 장소 지정**

-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 지정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가능

○ **인계 및 관리**

- 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인계서 작성
- 구청장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등 보고

○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 하여서는 아니됨 (혼합 보관 금지)
-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의 종류별 처리방법(재활용, 소각)에 따라 보관·처리
- 수집·운반·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설치 등

○ 장부의 기록·유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기록 유지로 폐기물 발생, 운반·처리 상황 등 파악

○ 보고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1.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참조 : 청소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 : (032)560-439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 【☎ 032)560-4407】 에 문의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보관 장소 지정) ①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장소를 지정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폐기물을 임시로 보관 할 수 있는 장소

③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지정 하여야 한다.

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여부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사항 이행여부

제5조(인계 및 관리)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임시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마다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④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⑤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절차 등)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인계시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
2.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

②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인계시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
2.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
- ③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 업소 인계내역을 기재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

제7조(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한다.

⑦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제8조(장부의 기록)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말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앞 쪽)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	③ 상 호		④ 허가번호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차량번호		⑦ 운반일자	년 월 일
	⑧ 운반장소			
	⑨ 폐기물 종 류		⑩ 위 탁 량	kg
처리자	⑪ 상 호		⑫ 허가(신고)번호	
	⑬ 시 설 소 재 지	(전화번호 :)		
	⑭ 시 설 명		⑮ 반입일자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처리방법		<input type="checkbox"/> 반 입 량	kg
<input type="checkbox"/> 확인	운 반 자		처 리 업 소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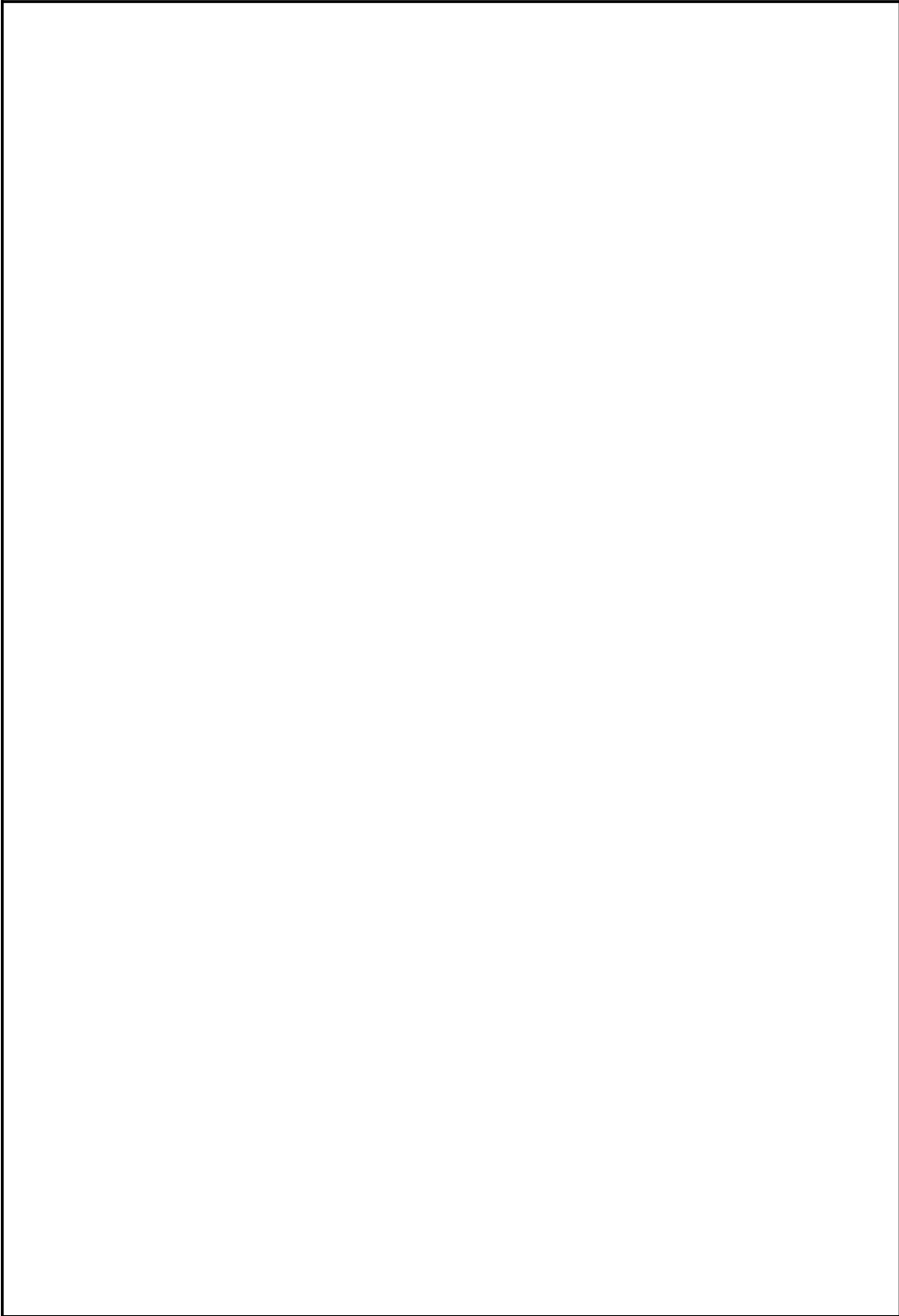
-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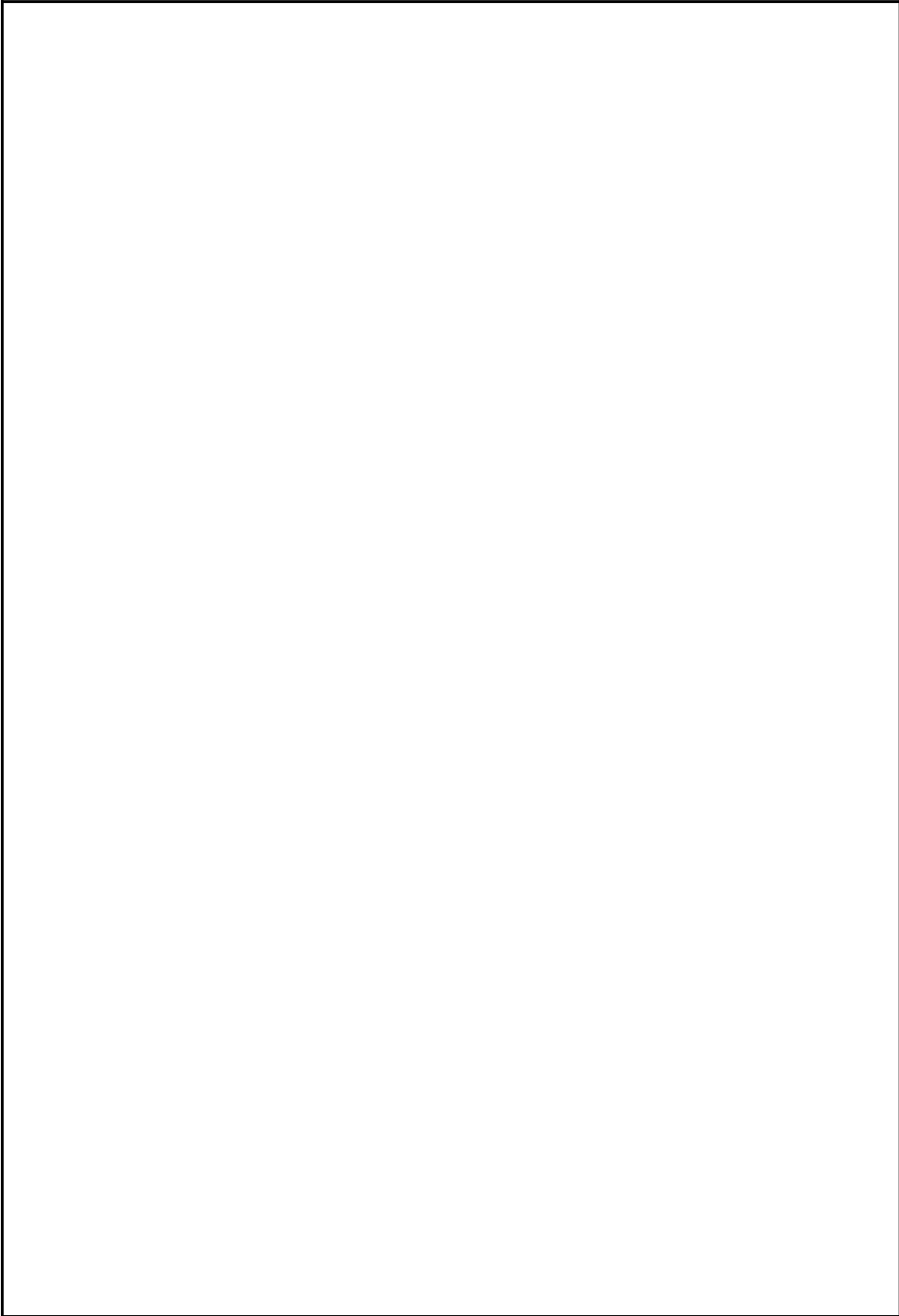
3. 업소별 기재항목

-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구청 명을 기재
-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또는 이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고기간 : 2006. 12.27 ~ 2007. 1. 10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손성호 외 16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차량번호)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심곡동 244 ☎ 560-4871, FAX 560-4869		
	기 한	2007년 1월 10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반차량내역

연 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손성호	인천시 서구 연희동 737-10호 대성아트빌 202호	27루 1075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제29조 1항	
2	김인기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0-2호 정한빌라 2동 202호	인천35 고3078	엔진후드업	제29조 1항	
3	안병호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0-12호 정한빌라 나동B01호	56노 4882	후등화렌즈착색, 전면불법등화설치, 방향지시등 청색사용	제29조1항	
4	문제장	인천시 서구 연희동 741-3 삼성그린빌라 A동 202호	인천80 머8638	방향등청색,불법등화, 클리어렌즈,타이어외 돌출,적재함격벽제거	제29조 1항 제34조	
5	광덕 파렛트	인천시 서구 오류동434-22호	73우3657	전면불법등화, 봉인탈락	제29조 1항, 제10조3항	
6	안계명	인천시 서구 가정동 290-79 서진아트빌 103-302	27러 5974	방향지시등 청색	제29조 1항	
7	배창욱	인천시 서구 연희동 731-15 서부빌라아파트301호	인천34 도4834	철제범퍼설치	제29조 1항	
8	강승용	인천시 서구 석남동 489 효정아파트 1동 409호	인천60 나4582	전면불법등화, 방향등및 후진등청색	제29조 1항	
9	장종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139-2호 신명아파트 205/602	인천7 모5289	봉인탈락	제10조 3항	
10	황대환	인천시 서구 석남동 559 경인아파트 가동206호	인천30 두8211	클리어램프 설치, 뒤방향등청색,후드업	제29조 1항	
11	전병근	인천시 서구 불노동 179 동부아파트 108동101호	28러 5535	후등화장치 클리어램프설치	제29조 1항	
12	최홍배	인천시 서구 왕길동 634-1호 신명스카이뷰드림아파트 105동 1204호	09구 2375	클리어렌즈, 방향지시등청색, 후드업	제29조 1항	
13	최용상	인천시 서구 가정동 472-20 두상빌라 4동 301호	인천33 다4313	엔진후드업 설치	제29조 1항	
14	최형태	인천시 서구 가정동341-14 하나아파트 204동 604	인천35 고5464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15	천선우	인천시 서구 불노동 산121-1호	인천80 너8065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16	거화환 경산업 (주)	인천시 서구 왕길동105-2호	인천83 나5277	뒤번호판 봉인탈락	제10조 3항	
17	석태선	인천시 서구 마전동 587 동아아파트 107동1004호	인천35 마2663	후미등착색	제29조 1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6-10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6.1.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주민의 연서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함 (안 제2조)
 - 연서수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가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였고,
 - 개정이전에는 20분의 1이상으로 법에 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2006.1.11)으로 1/50 ~ 1/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1.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심곡동244) FAX: 560-4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560-40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 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 수)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주민 수에서 1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호

공 고 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부동산의 표시 : 인천 서구 대곡동 210-2 (도로 208㎡)
-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박 제 준 (한문) 朴 齊 駿
-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미상
-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대곡리 210
- ⑤ 신청인성명 : (한글) 박 홍 서 (한문) 朴 弘 緒
- ⑥ 신청인등록번호 : 460419-*****
- ⑦ 신청인주소 : 서울 양천구 목4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07동 305호
- ⑧ 취득사유 : 1954년 9월 16일 상속
- ⑨ 공고기간 : 2007년 1월 3일 - 2007년 3월 28일 (2개월)
- ⑩ 통지불가사유 :
- ⑪ 유의사항
 -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1월 3일

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호

공 고 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① 부동산의 표시 : 인천 서구 대곡동 210-3 (도로 43㎡)
-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박 제 준 (한문) 朴 齊 駿
-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미상
-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대곡리 210
- ⑤ 신청인성명 : (한글) 박 홍 서 (한문) 朴 弘 緒
- ⑥ 신청인등록번호 : 460419-*****
- ⑦ 신청인주소 : 서울 양천구 목4동 금호어울림아파트 107동 305호
- ⑧ 취득사유 : 1954년 9월 16일 상속
- ⑨ 공고기간 : 2007년 1월 3일 - 2007년 3월 28일 (2개월)
- ⑩ 통지불가사유 :
-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1월 3일

서구청장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2호

구금고지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1. 약정기간 : 2007. 2. 5 ~ 2010. 12. 31
2.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
 - (주)신한은행 (대표자 : 신상훈)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4. 주요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일상경비의 출납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2호

폐기물처리업등 허가 및 신고제한 2차 변경 공고

폐기물관리법제26조, 동법제30조, 동법제44조의2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신고를 제한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한목적 : 변동없음
2. 허가 및 신고 제한 적용범위

법·시행령·시행규칙	적 용 범 위(변경 전)	적 용 범 위(변경 후)	비 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①항내지③항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26조⑩항 및 동법시행규칙 18조 ①항2호,4호 9호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 의 변경 -운반차량(임시차량제외) 의 증차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증가) -운반차량(임시차량제외)의 증차 [폐기물중간처리업]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증가)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⑩항 및 동법시행규칙 19조의4①항3호		·폐기물처리업의변경신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 재지의 변경 [폐기물처리 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①항 및 ②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	·변경없음	

<p>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①항 및 동법시행규칙47조 ③항1호,5호,6호</p>	<p>·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재활용대상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 집예상량 [50%이상 변경 (증가)하는 경우]</p>	<p>·변경없음</p>	
<p>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①항 및 동법시행규칙47조 ③항6호</p>		<p>·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폐기물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용량의증가</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②항내지④항</p>	<p>·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p>	<p>·변경없음</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①항6호,10호</p>	<p>·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운반차량의 증차</p>	<p>·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용보관량의변경(증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운반차량의 증차</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①항5호</p>		<p>·건설폐기물처리업의변경허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 지의 변경 [건설폐기물처 리업 허가기관이 우리구가 아닌 다른 기관인 업체가 우리구로 이전 할 경우]</p>	

3. 허가 및 신고 제한 기간 : 2007. 1. 9(화) ~ 2009. 12. 31(목)

4. 제한지역 : 서구 전지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전화 : 560-44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7호

200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계획인원

- 명예퇴직 : ○명
- 조기퇴직 : ○명

2. 명예(조기)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 공무원연금법상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 조기퇴직 : 실제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

나.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까지

다. 신청절차

- 명예·조기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별첨 「명예·조기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명예·조기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3. 대상자 선정 및 추천

가. 소속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3조규정에 의하여 매월 신청기간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추천해야 함.

나.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조기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장기위탁 교육훈련 진행중인 자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수당지급 신청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대상 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4. 대상자 심사결정 및 통지

추천된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는 당해 월 21일 이후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조기퇴직 대상자를 월 단위로 최종결정하며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의 취소

명예·조기퇴직 신청기간 이후 명예(조기)퇴직일 까지의 기간중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을 취소.

6. 수당지급

명예·조기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결정이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7.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 ①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②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③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

8. 수당 산정방법

○ 명예퇴직

정년잔여 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 월수
2.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월봉급액의 반액 ×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2}\right]$
3. 10년 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 및 연봉월액의 81%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기준

- 월봉급액 = 연봉월액 × 66% = $\left[\frac{\text{연봉액} - \text{성과연봉}}{12}\right] \times 66\%$

※다만, 명예퇴직 산정기준은 2007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 조기퇴직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 지급

9. 기타사항

가. 소속기관장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조기퇴직의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한 대상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참조하시거나 총무과 인사팀(560-410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서식

- ① 자필 명예(조기) 퇴직원 1부
- ②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1부
- ③ 자필 사직원 1부
- ④ 퇴직자 보안서약서 1부
- ⑤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부
- ⑥ 계좌입금통장 사본 1부
- ⑦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

위원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①소 속		②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직 급 또는 등급	
④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		
⑦전화번호 (자 택)		⑧근속 년수	년 월 일	⑨정년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첨부 1. 명예퇴직원 및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2.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2007. . .

신청인 (인)

※⑭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7. .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기재상 주의사항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조 기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사유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 .

위원인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

①소 속		②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③ 직 급 또는등급	
④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 소			
⑦전화번호 (자 택)		⑧근속년수	년 월 일	⑨정년일	년 월 일
⑩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⑪수당청구액		
⑫정년잔여 기간(수당 지급대상 기간)		⑬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조기퇴직원 1부.

2. 조기퇴직자 요건심사서 (소속행정기관 작성) 1부.

3. 기관장 확인서(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규정 제4조 단서규정 해당자) 1부.

2007. . .

신청인 (인)

※ ⑭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7. .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07. . .

(인)

귀하

※ 기재상 주의사항 :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반드시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 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속 : _____	직위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해당(이상)유무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지 여부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인지 여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인지 여부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인지 여부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인지 여부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 제외)이 되기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인지 여부(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중인 자 포함)		
	명예퇴직원 자필작성 여부		
	그밖에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		
조사작성 및 확인자			
2007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대 상 자

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2. 퇴직사유 :

3. 보안교육 실시

○ 일 시 : 2007. . . .

○ 장 소 :

○ 교 관 :

○ 교육내용 :

4. 보안서약서 징구 : 별첨

퇴 직 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07. .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이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은 국가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07. . .

○ 서 약 자 : (인)

○ 서약집행관 소속·직위 :

직급 :

성명 : (인)

명예(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현황

(단 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기능직	비고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근속기간별	계																
	20년~25년미만																
	25년~30년미만																
	30년이상																
정년잔여기간별	계																
	1년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퇴직수당(원)																	

※ 특정직도 직급별로 구분 작성

※ 명예퇴직수당지급과 관련한 예산현황(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향후집행예정액 등) 별첨

2007년도 월별 명예(조기)퇴직 추천자 명단

(기관명 :)

소속 (실·과·동·소)	직위	직급	성명	주민번호	근속 기간	정년 구분	정년 (세 또는 년)	정년 예정일	정년 잔여기간	수당지급 예정액(동)	퇴직 희망일	비고 (취업 등)

※ 근속기간 : 연금법상 재직기간

※ 반드시 Ms-Excel 파일로 작성하여 E-mail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8호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9세이상의 주민수 ①	19세이상의 주민중 선거권이 없는자 ②	19세이상의 주민총수 ① - ②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277,071명	969명	276,102명	5,522명 (1/5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29호

2007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단위 : 명)

구 분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영주자격자)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수비율)	비 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271,357	271,339	18	22,613 (1/12)	

※ 내국인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

2007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에서 기부금품을 취득할 때에는 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구의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구의 기부심사위원회”로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0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무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재산관리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주소 및 문의

- 주 소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 560-4160, FAX : 560-4159
- 담당공무원 : 권 기 용

5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